

중국의 對개도국 무역마찰 증가 및 대응

1. 중국의 대외 무역마찰 추세

- 최근 중국의 對유럽 및 對미 무역마찰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마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에콰도르, 페루, 콜롬비아, 브라질, 터키는 2005년부터 중국산 방직물에 대해 반덤핑조사 또는 세이프가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최근에는 타이어, 도자기, 완구 등의 업종으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음.
-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반덤핑 52건, 특별 세이프가드 7건, 세이프가드 5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60%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의한 것임.
- 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는 증가하고 있음.
- 2005년 하반기에 16개 WTO 회원국이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당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(106건) 23% 감소함.
- 그러나 중국은 2005년 하반기에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모두 33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당하여 2004년 동기대비 9건(37.5%)이 증가했고, 최종적으로 22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

부과되었음.

2. 개도국과의 무역마찰 현황

□ 개발도상국의 중국산 방직물에 대한 반덤핑제소 증가

- 터키와 미국 방직업연합회는 2004년 3월 3일 발표한 공동성명(‘이스탄불 선언’)을 통해 중국산 방직물에 대한 쿼터제 취소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WTO에 요구하였음.
- 이에 50여 개국의 90개 관련조직이 서명했는데 잠비아와 탄자니아 등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이 개발도상국이었음.
- 인도는 2004년 5월 18일 중국산 실크제품(20g/m~100g/m)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100여 개 기업이 관련되어 있고 소송금액도 1억8천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임.
- 에콰도르 대외무역부는 2005년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중국산 방직물 219종을 WTO에 신고하는 한편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음.

□ 기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수도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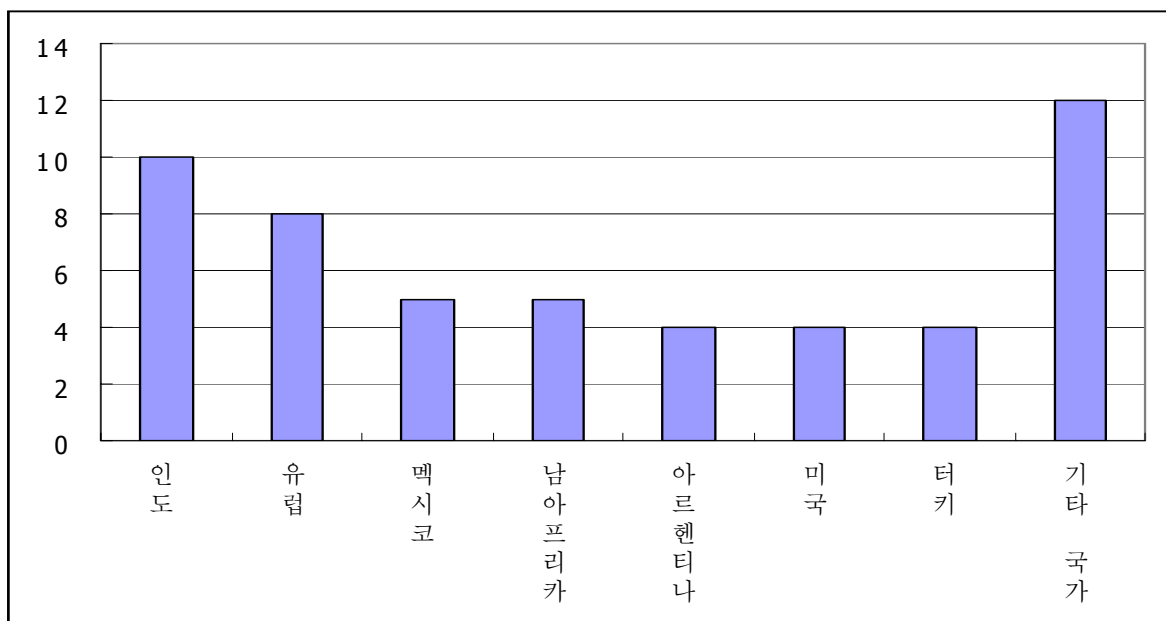
- 타이어의 경우, 오스트레일리아, 브라질, 페루, 이집트, 아르헨티나, 터키, 남아프리카공화국, 멕시코, 인도 등 9개 국가에서 거의 동시에 반덤핑조사를 실시했음.
- 도자기 제품은 2005년 이집트, 페루, 멕시코,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당함.
- 화공 및 플라스틱 제품도 반덤핑제소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05년 하반기 전 세계 화공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17건 가운데 중국이 13건을 차지하였음.

□ 2005년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국가 가운데 인도가 반덤핑제소 건수 및 소송 금액에서 선두를 차지

- 인도는 중국과 무역마찰이 가장 심한 국가로서, 2006년 3월 중국산 공업염에 대해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반덤핑제소를 실시하였음.

<그림 1>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국 분포(2005년 기준)

(단위: 건수)



자료: 중국 상무부

3. 개발도상국과의 무역마찰 증가 원인

□ 개발도상국의 對중국산 방직물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급증한 원인은 중국의 방직기업 규모가 방대하여 여러 개발도상국의 전체 방직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.

- 예를 들어 중국의 대규모 방직기업 한 개 업체의 생산규모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방직물 생산규모와 비슷한 실정임.
- 스리랑카의 경우 방직산업 종사자가 180여만 명에 이르고 방직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

95%를 차지하고 있음.

- 중국의 방직산업은 이미 공업화를 이룬 반면 인도는 아직까지 수공업 형태가 대부분으로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태임.

□ 중국은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절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무역구제조치 또한 투명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.

- 개발도상국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대부분 WTO의 반덤핑 관련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 역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.

-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100여장이 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반해, 개발도상국에서는 10여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반덤핑 제소도 가능하다고 함.

- 개발도상국의 반덤핑제소 절차의 투명성도 낮아 2005년 인도의 중국산 실크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에 대응해 중국이 인도에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.

□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주 보호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.

- 터키, 우루과이, 페루, 콜롬비아, 브라질 등이 중국산 방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으며, 개발도상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제소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임.

□ 중국의 규범화되지 않은 무역관행이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함.

- 중국 수출기업이 제품의 통관신청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기록하는 것도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.
- 인도는 2005년 중국산 실크제품의 세관 통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반덤핑제소를 한 바 있음.

□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·외교적 고려

- 중국이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반덤핑제소에 대해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때와는 달리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개발도상국과의 무역마찰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- 중국 상무부는 2005년 말 대다수 교역상대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정치동맹국들로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에 대해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만은 없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.

4. 중국의 대응방안

- 중국은 2006년 8월 이후부터 ‘불공정 저가 수출행위 조사 및 처벌규정’(不正当低价出口行为调查和处罚规定)을 실시할 예정임.
-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는 동 규정 초안은 10년 전 대외경제무역합장부가 발표한 <저가 수출행위 처벌에 관한 잠정규정>을 대체할 것임.
- 상무부 관리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수출 질서를 바로잡고 전체 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데 치중함.
- 또한 동 규정의 초안은 수출입상회와 산업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, 수출상회는 무역질서를 규범화하는데 협조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범화를 이룩해야 하며 산업수

출 상황에 맞게 회원기업들의 수출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- 전문가들은 초안이 제대로 실행되면 중국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산업 보호에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, 특히 방직물과 가전제품의 반덤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.

□ 문제는 불공정 저가수출의 기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임.

- 불공정 가격의 기준을 관세신고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 생산원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또한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한 처벌 증거자료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.

□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.

- 아르헨티나는 2004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2005년 7월 안경 반덤핑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, 페루,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.

□ 중국내 일부 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규범화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.

<참고 자료>

《財經》, “来自"盟友"的贸易挑战”, 2006. 5. 15

《經濟觀察報》, “贸易 自救 中国仍需努力”, 2006. 5. 15

, “WTO反倾销协议"中国版"的困境”, 2006. 5. 29